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접경지역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 시군과 민통선과의 거리, 지리적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그간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시군을 추가 지정하여 국가지원 등에 대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 시군에 경기도 가평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추가(제2조 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포천시”를 “포천시, 가평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춘천시”를 “춘천시, 속초시”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① (생 락)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락)	② (현행과 같음)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1. ----- ---, <u>가평군</u>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 -----, <u>속초시</u>
③ (생 락)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연 락 처	(044) 205 - 3513